

광주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5398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5. 7.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2. 2. 8. 접수 제15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소외 B은 기업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B과 사이에, 소외 B의 주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번호	보증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부자	연대보증인
	대출과목	보증기한	보증금액		
C	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	2020-09-29	20,000,000	소외 B	-
	중소기업자금 대출	2025-09-29	19,000,000		

2) 소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3. 1. 31. 원금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23. 6. 15. B을 대위하여 IBK 기업은행에 17,303,6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구상금 회수를 위한 채권집행보전비용으로 1,916,72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9. 4. 1.부터 연 8%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2022. 2. 8.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2022.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 10. 19.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에서 5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원고 등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2022. 2.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한 것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3. 1. 31.이다.

B이 2022. 2. 8. 무렵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손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별지